

의안 번호	518
----------	-----

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행 정 기 획 위 원 회

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 민간위탁 구의회 동의안

검 토 보 고 서

2025. 10. 17

전문위원 김동성

1. 제안경위

- 가. 제출자 : 성북구청장
- 나. 의안번호 : 제518호
- 다. 제출일자 : 2025. 10. 1.
- 라. 회부일자 : 2025. 10. 14.

2. 제안이유

- 이용자의 다양한 행정상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기 위해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을 선정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의2(승인 및 동의)에 따라 민간위탁 사전 동의를 구하고자 함

3. 주요내용

가. 민간위탁 개요

- 위탁사업 : 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
- 위탁기간 : 2025. 12. ~ 2026. 2. (위탁계약 체결일부터)
- 운영기간 : 2025. 12. 20.(토) ~ 2026. 2. 1.(일)(우이천다목적광장)
2025. 12. 27.(토) ~ 2026. 1. 25.(일)(길음7단지 유휴부지)
- 위탁내용
 - 눈썰매장, 얼음썰매장, 아이스링크, 체험학습장, 어린이 놀이기구, 휴게시설,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, 폐장 후 철거
 -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, 인력 운용 등
 -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-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- 위탁비용 : 1,070,000천원
- 수탁 참가 자격
 - 지방자치단체를 당사자로 하는 계약에 관한 법률 시행령 제13조 및 동법 시행규칙 제14조 규정에 의한 자격요건을 갖춘 사업자
 - 최근 5년 이내 실외 눈썰매장 또는 스케이트장을 설치 및 운영한 수탁 또는 용역 실적(단일 건 기준 2억원 이상)이 있는 사업자
- 위탁업체 선정 : 공개모집 후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에서 제안서 심의 후 선정

나. 추진근거

- 국민체육진흥법 제8조(지방 체육의 진흥)
- 지방자치법 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

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) 및 제5조(민간위탁사무 내용)

다. 민간위탁 추진 필요성

- 생활체육진흥을 위해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을 지방자치단체 이외의 자에게 위탁하여 민간의 경쟁력 유도를 통해 능률성을 제고하고 효율적인 운영을 하고자 함
- 관련 전문지식과 풍부한 경험을 갖춘 기관 또는 개인을 선정하여 이용자들의 다양한 요구에 부응하고 양질의 서비스를 제공하고자 함

4. 참고사항

- 추진근거
 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
 -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 제4조, 제5조

5. 검토의견

□ 개요

- 본 동의안은 '2025 성북구 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(이하 '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')' 사무를 민간위탁 방식으로 추진하고자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(이하 '민간위탁 조례') 제4조의2에 따라 성북구의회의 동의를 받고자 제출된 것임.

□ 주요내용

- 2025년 12월부터 2026년 2월 초까지 운영되는 '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' 사무를 풍부한 경험과 전문성을 갖춘 기관 등을 대상으로 공개모집 후 선정심의위원회의 제안서 심사를 거쳐 2개월 정도 단기사업을 추진하려는 것임.
- 민간위탁하려는 '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'에 관한 사무 내용과 2024년도 운영 결과는 다음과 같음.
 1. 눈 눈썰매장, 얼음썰매장, 아이스링크, 체험학습장, 어린이 놀이기구, 휴게시설, 부대시설 등 시설 설치 및 조성, 폐장 후 철거
 2. 시설 운영에 대한 전반적인 업무로 안전 관리, 인력 운용 등
 3. 기타 눈썰매장 운영과 관련하여 필요한 사항
 4. 그 밖에 우리구가 요청하는 사항

2024년도 겨울눈썰매장 운영 결과

□ 위치 및 운영기간 :

위치	운영기간
길음7단지 앞 공터	2024. 12. 28.(토) ~ 2025. 1. 26.(일) (30일간)
석계역 옆 우이천 다목적 광장	2024. 12. 20.(금) ~ 2025. 2. 02.(일) (45일간)

- 운영시간 : 10:00~17:00,
- 입장요금 : (관내0 무료, (관외) 3천원(길음7단지)/ 5천원(우이천)
※단, 36개월 미만 영유아 무료
- 총사업비 : 1,092백만원(민간위탁금: 1,070백만원, 일반운영비 22백만원)
- 위탁체 : 에스티산업
- 입장인원 : 총 47,200명 [2023 총이용객(31,425명) 대비 15,775명 증가]

구 분	계(단위:명)	우이천			길음7단지		
		소계	성인	미성년	소계	성인	미성년
합 계	47,200	33,283	16,845	16,438	13,917	6,711	7,206
관 내	45,419	31,905	16,126	15,779	13,514	6,525	6,989
관 외	1,781	1,378	719	659	403	186	217

- 운영수입 : 총 8,099,000원

구 분	입장료(원)	관외(명)	수익(원)
길음동	3,000	403	1,209,000
우이천	5,000	1,378	6,890,000
합 계			8,099,000

□ 민간위탁 근거 및 타당성

- 「지방자치법」 제117조제3항¹⁾에서 구청장은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않는 사무를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법인·단체 등에게 위탁할 수 있도록 규정하고 있음.
- 또한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4조제1항제3호²⁾에 따라 구청장의 소관 사무 중 “특수한

1) 「지방자치법」제117조(사무의 위임 등) ③ 지방자치단체의 장은 조례나 규칙으로 정하는 바에 따라 그 권한에 속하는 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주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련되지 아니하는 사무를 법인·단체 또는 그 기관이나 개인에게 위탁할 수 있다.

2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4조(민간위탁 대상사무의 기준 등) ① 법령이나 조례에 정한 구청장의 소관사무 중 조사·검사·검정·관리업무 등 구민의 권리·의무와 직접 관

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”를 법인·단체 등에 민간위탁 할 수 있다는 점을 고려할 때, ‘눈썰매장 조성 및 운영’은 시설 설치·유지 및 안전 관리 등 전문성 및 노하우가 요구되므로 민간위탁 사무대상에 해당한다고 판단됨.

- 특히 다중이용시설 특성상 안전확보가 최우선 과제인 만큼, 전문성을 갖춘 민간에서 운영하는 것이 효율적이고 안정적인 서비스 제공에 적합하다고 사료됨.

□ 선정방법의 적정성

- ‘선정방법’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제7조제1항 및 제2항³⁾에 따라 공개모집 후 선정심사 위원회 심의를 거쳐 위탁을 추진하려는 것으로 선정방법에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됨.

□ 종합의견

- 이상을 종합해 보면 본 동의안은 「민간위탁 조례」 등의 관련 규정에 따라 제출된 동의안이며, 구의회 동의 후 선정심의위원회를 거쳐 민간위탁을 추진하는 등 민간위탁 관련 법규 절차대로 진행하는 사항으로 별다른 문제는 없는 것으로 사료 됨.
- 다만 ‘눈썰매장’ 운영 특성상 안전성 확보와 공공성 보장이 핵심이므로, 위탁 계약 체결 과정에서 안전관리 기준·운영조건을 명확히 하고, 수탁기관 선정 시 전문성에 대한 철저한 검증이 필요하다고 사료됨.

계되지 아니하는 다음의 사무를 민간위탁 할 수 있다.

3. 특수한 전문지식이나 기술을 요하는 사무

- 3) 「서울특별시 성북구 사무의 민간위탁에 관한 조례」제7조(수탁기관 선정) ① 수탁기관의 선정은 공개모집을 원칙으로 하며, 구청장은 수탁기관 선정을 위한 공고 시에 선정기준 및 배점 등을 공개하여야 한다. (개정 2025.3.13.)
- ② 수탁 대상기관을 공개모집할 경우에는 신청서와 함께 위탁사무의 사업계획서 등을 제출하게 하고, 해당분야의 전문가 등으로 구성된 서울특별시 성북구 민간위탁 선정위원회(이하 “선정위원회”라 한다)에서 제6조에서 정한 선정기준에 적합한 수탁기관을 선정하도록 한다.